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9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308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8가단508287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주위적으로 2017. 11. 22. 체결된 금전증여계약, 예비적으로 2017. 8. 30. 체결된 양육비지급계약을 '30,454,942원 및 그중 30,454,875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54,942원 및 그중 30,454,875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2. 9. 1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L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L 주식회사는 2018. 4. 6. 원고에게 B의 폐업을 이유로 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4. 13. L 주식회사에 30,699,7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B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30,454,942원(= 대위변제금 잔액 30,454,875원 + 확정손해금 67원) 및 그중 30,454,875원에 대한 2018.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2. 5. 31. B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었는데, 2017. 8. 30.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세 자녀를 양육하되 B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B는 2017. 9. 7.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구리시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 D에게 37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1. 22. 이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 중 69,546,05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7. 12. 1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나 제1~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7. 11. 22. 그 매매대금 중 69,546,05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B가 2017. 8. 30. 체결된 양육비지급계약에 따라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육비 지급으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22.자 증여계약 또는 2017. 8. 30.자 양육비지급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양육비로 받은 것인데, 피고가 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양육비지급계약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69,546,05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 170,000,000원 중 일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위 양육비지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B로부터 69,546,050원을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양육비지급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 165,000,000원, 조세채무

88,871,310원 외에 L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등 여러 채무가 있어 B가 채무 초과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육비지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69,546,050원을 받은 것이 양육비지급 또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B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B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B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혼 후 자녀들 교육비, 보험료, 생활비로 매달 2,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양육비지급계약 당시 세 자녀들의 나이가 8~14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가 부담하게 될 양육비 액수는 170,000,000원을 훨씬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이례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사해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양육비지급계약은 재산분할로서의 성질도 어느 정도 띤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B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107,115,30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 전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및 이혼에 따라 피고는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매수인 C로 하여금 매도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돈은 피고의 주거지 마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B가 이 사건 양육비지급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지급받은 69,546,050원은 양육비 및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